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문화 35300- (전화: 731-6186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장	No 15
수신처 보존기간		9.11	
시행일자	'89. 9.	9.11	
부서 장	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동백
단 장	문화담당관		
기안책임자	나송주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426	
제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b>제 1 안 내부결재</b>			
1. '89. 8. 23 개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별첨 고시(안)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목록 : 별 첨			
나.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유형문화재를 지정함.			
첨부 고시(안) 1부. 끝.			
<b>제 2 안</b>		2538	

수신 문화재관리국장
참조 문화제1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제 지정 통보
1. '89. 8. 23. 서울특별시 문화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제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내용 : 제1안 "가항" 이기시행. 끝.
<u>제 3 안</u>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총무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제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 55조및 서울특별시 문화제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제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하니,
2. 관련해당과 (시민봉사실, 세무1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등)및 관할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관계공부를 기록 정리할것이며 향후 문화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지정내용 : 제1안 "가항" 이기시행. 끝.
수신처 종로구, 성동구청장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sup>573</sup>

발신 문화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제 지정 통보

1. 문화제 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제 보호조례 제 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내용 : 제 1안 "가"항 이기 시험. 끝.



수신처 세정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지도과, 재개발과, 도시개발과,  
공원과, 녹지과, 수원기진과장

제 5 안

수신 총무처장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관보 게재 의뢰

1. 별첨 고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제 지정하였기 재산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자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서문 2부. 끝.

제 6 안

수신 공보관

발신 문화담당관

제목 시보게제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제 지정하였기 재산소유자및 관리자

에게 통지하고자 시보에 게제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2부. 끝.

제 7 안

수신 수신처남조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제 지정 통보

1. 귀 기관에서 소유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제  
보호법 제55조및 서울특별시 문화제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문화제  
로 지정되어 동조례 제 10조에 의거 통지하오니,

2. 문화제 보존 관리 관계법규에 의거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남기출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내용 : 제1안 "가"항 이기 시행.

첨부 지정서 1부. 끝.

수신처 성동구 성수동1가 642 북도수원지사무소장, 종로구청장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6 호

서울특별시 유명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명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1989. 9.

서울특별시 장

0. 서울특별시 유명문화재 지정 목록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지정물건	소재지	구조및규모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2호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	송수실 1동 완속여과지 1개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	송수실 1동 312.4㎡ 완속여과지 1개소 4,433	뚝도수원지 사무소장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3호	파고다공원 팔각정	팔각정 1동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	1동 160㎡	종로구청장

제 72 호

#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 (안)

명 칭 : <sup>20</sup>동대문로 1가길 제 1 경유상

수 량 : 동대문로 1동  
안동대문로 1소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89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제 73 호

#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 (안)

명 칭 : 피나그라 공원 팔각정

수 량 : 1동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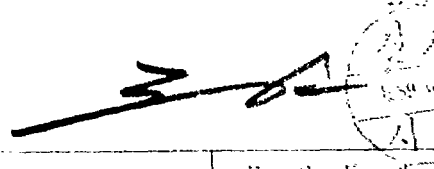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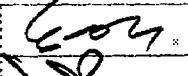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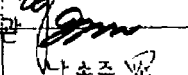
89 년 7 월 11 일

서울특별시장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문화 35300-	(전화: 731-6187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9. 8.		
부서장			
보조기관	단장	협조기관	문서통제
	기획관		
기안책임자	문화담당관  나송주		발송일
경유 수신 침조	내부결재		발행일자
제목	<u>서울특별시 문화제위원회의 의결과및 처리계획</u>		
1. '89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문화제위원회의 의결과를 변심과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첨부 1. 문화제위원회의 의결과및 처리계획 1부.			
2. 회의록 1부.			
3. 문화제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문화제위원회 회의결과및 처리계획

( 회의 개최사항 )

- 일 시 : '89. 8. 23.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별관 회의실
- 참석인원: 제 1, 2분과위원 14명  
(강영선, 윤국병, 주남철, 맹인제, 이정덕, 박인곤, 김홍식, 김영상, 문명대, 홍운식, 이현희, 심우준, 이상무, 허영환)
- 회의결과: 총 7건 [ 가 결 : 4건  
제 검토 : 3건 (공사 2건 포함)

( 회의 결과요약 )

안 건	결 과 요 약
1. <u>애화문복원계획</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 (원위치에서 3.5m우퇴, 기존성곽 11m해체)으로 설계하여 문화제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문화제위원회 심의후 시행</li> <li>· 애화문주변 건축허가 신청 (애화동31번지)건은 문화제 보호구역 안각 적용하여 허가하고, 저촉될경우 다시 문화제위원회 외부</li> </ul>
2. <u>서십자각 복원계획</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제관리국의 경복궁 복원시 복원토록 건의 조치</li> </ul>

안 건	결 과 요 약
<p>3. <u>뚝도수원지 문화제 지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정수장 (송수실, 완속여과지)는 문화제로 지정·보존하고</li> <li>· 제2정수장은 모형도와 사진등 자료를 만들어 보존하는 방안 강구</li> </ul>
<p>4. <u>파고다공원에 팔각정 문화제 지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각정은 유형문화제로 지정하고, "양구일부"(해시계) 데석은 자료조사후 차기위원회에 외부</li> </ul>
<p>5. <u>충숙이공 신도비 보호구역 지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역을 지정키로 함. (12,247㎡)</li> </ul>
<p>6. <u>시지정문화제 보수 공사</u>  (가) 성제묘담장설치 공사  (나) 식파정 보수공사및  데원군벌장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제묘는 현지답사하여 차기위원회에 외부(단순한 보수는 부적합)</li> <li>·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제조사후 위원회에 외부하여 결정</li> <li>· <u>소위원회 구성</u> : <u>박인근</u>, <u>주남철</u>, <u>김흥식</u></li> </ul>
<p>7. <u>화산군신도비 주변 건축이가(서태문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처리방안 제시하면 문화제위원회의 제검토후 결정토록 조치</li> </ul>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안건

## 1. 예화문 복원 계획

( 심의개요 )

서울성곽의 4소문의 하나인 예화문의 원위치를 최종확인 및 서울성곽과 조화되도록 복원계획안 심의 결정

### 0. 공사개요

- 위치 : 삼선교 - 예화동로타리간 도로중간지점의 '석굴암'위
- 건평 : 약 15평 (정면3칸, 측면2칸)
- 구조 : 우진각지붕, 문루형태
- 시공 : '90. 1 - '91. 12.

### 0. 복원계획검토

원위치가 동소문로 석굴암위로 최종확인됨에 따라 원위치와 근접한지점에 2개안(A, B 안)복원계획 검토

( 심의결과및 조치계획 )

- 0. 복원안중 B 안(원위치에서 3.5m 후퇴, 기존성곽 11m 에체)으로 설계하여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시행.
- 0. 복원지점 근접 건축허가 신청건은 문화재 보호구역 양각 적용기준에 의하고, 저축될서는 다시 문화재위원회 외부

## 2. 서십자각 복원계획

### ( 심의개요 )

전통문화치대 복원사업의 일환 으로 경복궁의 서측 망루인 서십자각을 원형  
대로 복원코자 복원위 치 및 방안 검토 결정

### 0. 공사개요

- 복원위치 : 국립중앙박물관 서측담장 가각 지점
- 규 모 : 약 8평 (정면 3칸, 측면 3칸)
- 영 태 : 석조문루위에 망루 설치
- 시 공 : '90. 3 - '90. 12.

### 0. 복원계획안 검토 - 4개안

- 1 안 : 원위치 복원
- 2-4 안 : 위치 변경 (중앙박물관내) 복원

### ( 심의결과및 조치계획 )

- 0. 문화재관리국에서 경복궁 복원시 복원토록 건의 조치  
- 서울시의 서십자각 복원계획 집행 보류

### 3. 뚝도수원지 문화제 지정

#### ( 심의 개요 )

서울상수도 최초의 수원지시설인 뚝도수원지(제1,2정수장)를 영구 보존 관리  
코자 서울시 지방문화제로 지정 심의

#### 0. 현 황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642
- 시설용량 : 500,000 m<sup>3</sup> /일
- 규 모 : 5개정수장 (6개구 72동 급수)

#### 0. 문화제 지정 검토

- 제1정수장 - 송수실, 완속어과지, 침전지  
(건립년도 1908년)
- 제2정수장 - 송수펌프실, 급수어과지, 집수정  
(건립년도 1922년)

#### ( 심의결과및 조치계획 )

- 0. 제1정수장 (송수실, 완속어과지)은 서울시 유형문화제 지정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제 제 72호로 지정 조치
- 0. 제2정수장은 모형도나 사진등 자료 작성하여 보존 방안 강구  
— 뚝도수원지사무소에 보존방안 시달 조치

#### 4. 파고다공원에 팔각정 문화재 지정

##### ( 심의 개요 )

3.1 독립만세 운동의 발상지인 파고다공원에 팔각정 명구 보존 관치소가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심의

##### 0. 현 황

- 위 치 : 종로구 종로2가 38 파고다공원에
- 규 모 : 48.4평 (160㎡)
- 건립년대 : 1897년 최초의 공원인 파고다공원 개설시 동시 신축

##### 0. 문화재 지정 검토

팔각정 및 파고다공원에 옮겨져 있는 양구일부 (해시계) 대석의 문화재 지정

##### ( 심의결과 및 조치 계획 )

##### 0. 팔각정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73호로 지정 조치

##### 0. 양구일부(해시계)대석은 자료조사후 차기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심의



5. 충숙이공 신도비 보호구역 지정

( 심의 개요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70호 충숙이공 신도비에 대한 주변 지역 정화와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코자 함.

0. 연 황

- 위 치 : 노원구 하계1동 16-1, 32번지
- 문 화 재 : 충숙이공 신도비 (유형 70호)  
충숙이공 영정 (유형 69호)
- 관 리 자 : 벽진이씨 한성공 종중

0. 보호구역 지정 검토

보호구역 대상범위 : 9필지 12,247㎡(3,705평)

( 심의 결과 및 조치 계획 )

0. 보호구역 (12,247㎡) 지정키로 함.

- 문화재보호법 8조 및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9조에 의거 지정 조치.

6. 서울시 지방문화재 보수 공사

( 심의개요 )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방안 검토 결정키  
위함.

0. 대상문화재 : 성제묘(제7호), 석파정(제26호), 대원군별장(23호)

0. 심의검토사항

- 성제묘 - 담장공사시 3층석탑과 주변 석물 이동 필요
- 석파정, 대원군별장
  - 석파정 소유주가 대원군별장을 원위치인 석파정내 이전등 인허가  
전면복원 희망 (일부 자비 총당 조건)으로,
  - '89예산만으로 건물 부분보수유지안 검토 필요

( 심의결과및 조치계획 )

- 0. 성제묘는 현지답사하의 단순한 보수보다는 주변 정화등 검토하여 시행
  - 문화재위원의 현장답사후 자문받아 공사 시행코자 함.
- 0. 석파정, 대원군별장은 조사소위원회 구성 현지 제조사후 위원회 외부  
결정
  - 소위원회의 현지 제조사 결정에 따라 공사 시행코자 함.

7. 화산군 신도비 주변 건축허가

( 심의 개요 )

서울시 유형문화재 41호, 화산군 신도비 주변 건축허가에 따른 문화재  
보호 대책안 강구

0. 건축허가내역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2동 75-212외 1필지
- 규모 : 대지 364 (110평)  
건물 874 (265명, 지상 4층)

0. 심의 검토

- 서대문구청 요구 대책안 검토
  - 화산군 신도비의 동일지면상 위치이전및 조경하고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문화재와 조화있게 건축

( 심의결과및 조치계획 )

- 0.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정사항 없음.
-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강구 제시하면 문화재  
위원회의 재검토후 결정토록 조치

회 의 록 ( 요 약 )

문화담당관 : 인사및 지난회의결과및 처리사항 요약 보고  
금일회의 첫번째 안건인 메화문 복원계획 개요 설명

태창건축대표 : 슬라이드로 복원계획안 설명

김 영 상 : 복원안을 결정 설계안후 문화재관리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낭비남.  
안이 결정되면 문화재관리국 승인받아 설계하자.

주 남 철 : 동감이다.

이 정 덕 : A 안은 안된다. B 안이 좋다.

주 남 철 : B 안이 좋다. 공원화 해가며 시공하면 좋겠다.

강영신위원장 : 그럼 B 안으로 결정한다.

태창건축대표 : 복원지점 인접지 건축이가건 설명

주 남 철 : 양각 저축되지 않으면 건축이가함이 당연하다.

박 인 권 : 미관상 조형성등 고려하여 이가하자

문화담당관 : 보호구역 경계 양각 적용아이 저축안되면 이가하고, 저축시는 위원회  
심의 받겠다.

전 위 원 : 찬성한다.

- 문화담당관 : 두번째로 서십자각 복원계획 개요 설명
- 대한건축대표 : 슬라이드로 복원계획안 설명
- 김영상 : 경복궁관리청이 아닌 서울시에서 시비들이 복원하는것은 고려해야 한다.
- 이정덕 : 복원계획안 5개안이 다 모순점이 있다.  
먼 장래생각 사업 안하는것이 좋겠다.  
헌데 도시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영환 :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 김홍식 : 원래위치 도로상에 위치 표시해두면 좋겠다.
- 위원들 :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로 복원토록 함이 좋겠다.
- 문화담당관 : 문화재관리국의 경복궁 복원시 복원토록 간의 조치하겠다.
- 전위원 : 찬성한다.
- 문화담당관 : 세번째, 쪽도수원지 문화재지정 개요 설명  
쪽도수원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문제점이 있다.
- 주남철 : 1차 현장조사사항 설명  
유형문화재 지정하면 좋겠다.
- 이정덕 : 상수도확장사업은 중요한 문제니까 1정수장만 지정하자.

- 수원기전과 : 상수도 확장공사 개요 설명  
제1정수장 (송수실, 완속이과지)만 지정해야 지장이 없겠다.
- 김영삼 : 다른곳에 부지확보 확장사업하면 어떻나
- 수원기전과 : 최소 4년반이 소요된다.
- 추남철 : 제1정수장(송수실, 완속이과지)은 문화제 지정하고, 제2정수장부지  
후일생각하여 모험도나 사진등으로 자료를 남기자.
- 전위원 : 찬성한다.
- 문화담당관 : 네번째, 파고다공원에 팔각정 문화제 지정 개요 설명
- 김영삼 : 1차조사사항및 노력 설명  
파고다공원에 옮겨적있는 앙구일부(헤시계) 데식도 문화제가치  
있다.
- 이경덕 : 팔각정은 오랜 세월 우리시민과 함께한 뜻있는 건물로 문화제 지정  
마땅하다.
- 이성무 : 문화제 지정은 신중이 어떤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으로 처리하는것이  
좋겠다.
- 강영신위원장 : 유명문화제로 지정하는것으로 결정하고 데식은 자료조사후 차기회의  
심의하자.
- 전위원 : 이의없다.

- 문화담당관 : 다섯째, 풍속이공 신도비 보호구역 지정 개요 설명
- 이 현 의 : 1차 현장조사 사항 설명, 보호구역 지정에 문제점이 없다.
- 문 명 태 : 보호구역 지정되면 차후 건축시에도 심의받아 하도록 해야된다
- 문화담당관 : \* 보호구역내 건축행위는 법상 당연,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 김 영 상 : 보호구역 지정함이 좋겠다.
- 전 위 원 : 찬성한다.
- 문화담당관 : 이섯째, 석유영문화재 보수공사 개요 설명  
린저 성제로 담장설치 공사 심의하자.
- 주 남 철 : 현장을 보니 현상제로 담장 설치공사 하는것은 의미없다.  
3층석담등 조사후 주변침비하고 공사하는것이 좋겠다.
- 문화담당관 : 성제묘는 현지 제조사하여 위원회 심의받아 시행하겠다.  
석파정과 태원군별장 보수공사 심의하자.
- 주 남 철 : 1차 현장조사 사항 설명
- 김 영 상 : 석파정 주변이 많이 변형된듯하다.
- 강영선위원장 : 석파정, 태원군별장 문화재 지정경위 설명  
태원군별장이 다시 원레위치인 석파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 김 영 상 : 보수관계 이전문제등 객관적으로 현장 제조사함이 필요하다  
소위원회 구성하여 제조사후 위원회 심의받아 시행하자.
- 전 의 원 : 찬성한다. 소위원회 구성 (박연근, 주남철, 김홍식)
- 문화담당관 : 마지막 안건인 화산군신도비 주변 건축허가건 회의부의 배경  
설명
- 김 홍 식 : 현장 답사 사항 설명
- 서해문건축과장 : 차트및 슬라이드로 설명  
건축병행 신도비 동일번지내 이전 정비건
- 문화담당관 : 문화제 주변 건축물 사진 승인 기준에 대한 지방문화제 적용에  
문제점 있음을 설명
- 김 영 상 : 잔디위로는 모르지만 데크위에 신도비 올리는것은 안된다.
- 주 남 철 : 기 건축허가 되었으니 건축주가 땅을 사서 잔디위에 올려 보호  
하고 주위 협조도 얻어 시행케 하자.
- 문화담당관 : 구청장 책임하에 주민 동의 얻어 조치토록 하자.
- 김 영 상 : 서에서 데크 구입하여 공원화하면 좋겠다. 주위 주민 협조가  
중요하다.
- 강영선위원장 : 이 문제는 사안이 오늘 결정하기 힘들다. 원칙적으로는 이전안함이  
좋고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문화담당관 : 이문제는 좋은 방안을 좀더 강구해보겠다. 폐회선언및 인사



서울特別市文化財委員

第一分科委員

姓名	現職 또는 重要經歷	專門 分野	住 所	電話 職場
				電話 自宅
강영선 姜永善	前江陵大學長	記念物	종로구부암동 318-5	720-8043
이영노 李永魯	前梨花女大教授	植 物	鍾路區東崇洞 1-88	362-6151 762-6163
윤국병 尹國炳	前高麗大教授	造 景	城東區中谷洞 33-60	267-8131 440-0735
주남철 朱南哲	高麗大教授	建築史	시초구盤浦本洞 盤浦아파트 67棟 106号	94-9341-9(619) 599-4743
맹인재 孟仁在	韓國民俗村代表	民俗學	江南區大峙洞 938-13	(수원 1331) 8-3425 556-0035
이정덕 李廷德	高麗大教授	建築史	江東區岩寺 3洞 울산아파트 4棟 301号	94-9341 ~ 9 478-1137
박업곤 朴彥坤	弘益大教授	建築史	恩平區구산동 27-40	323-0161(448) 355-5772
최춘환 崔椿煥	明知大教授	古建築	恩平區鷹岩洞 99-48	372-2601 ~ 10 355-4017
김동욱 金東旭	京畿大教授	建築史	江南區大峙洞 633 청실아파트 8棟 502号	수원 6-2175-9 566-5640
김홍식 金鴻植	明知大教授	古建築	江南區押驢亭洞 漢陽아파트 87棟 1102号	372-2601 ~ 10 548-7842

# 서울特別市文化財委員

## 第2分科委員

姓名	現職 또는 重要經歷	專門 分野	住 所	電話 職場
				電話 自宅
김영상 金永上	前 東亞日報 編輯局長	史 学	송파구 잠실동우성아파트 7棟 1103号	423-0231
손보기 孫寶基	前 延世大教授	考古学	西大門區北河峴洞 1-750	333-1333 362-5158
문명애 文明大	東國大教授	美術史	서울銅雀區上道4洞 279-229	367-8131 842-9896
홍윤식 洪潤植	東國大教授	美術史	麻浦區望遠洞 398-8	267-8131 333-1048
임효재 任孝宰	서울大教授	考古学	冠岳區新林2洞 103-136	877-5693 878-0275
이현희 李炫熙	誠信女大教授	史 学	龍山區東部二村洞 반포아파트 1동 302호	94-0124-8 795-2426
심우준 沈隅俊	中央大教授	書誌学	서초구方背本洞 758-4 삼호아파트 6동 1004호	815-5031 599-5278
이성무 李成茂	精神文化研究院 教授	史 学	서초구瑞草洞 90-1 우성아파트 5동 302호	234-8112-17 555-7254
허영환 許英桓	誠信女大教授	美術史	서초구瑞草1동 1558-2 現代빌라나동 201호	94-1024-8 586-8528
이태진 李泰鎭	서울大教授	韓 國 社會史	江南區驛三2동 713-5 개나리아파트 20동 105호	880-5246 566-3950

# 서울特別市文化財委員會會議資料

日時：'89. 8. 23(水) 14:00

서울特別市

2564

順                      序

1. 惠化門 復元計劃 .....	3
2. 西十字閣 復元計劃 .....	6
3. 莘丘水源地 文化財 指定 .....	8
4. 斗古斗公園內 八角亭 文化財指定 .....	10
5. 忠肅李公 神道碑 保護區域 指定 .....	11
6. 市 地方文化財 補修工事 .....	13

- 聖帝廟 壇場設置工事
- 石坡亭 補修工事
- 大院君 別莊 補修工事

## 1. 惠化門 復元計劃

史蹟 第10號 서울城廓의 4小門의 하나인 惠化門의 原來位置를 最終 確認하고 서울城廓과 調和있게 復元코자 함. (復元位置 및 復元方法 檢討)

### ○ 工事概要

- 位置：三仙橋－惠化洞로타리間 道路中間地點의 “石窟岩위”
- 建坪：約15坪(正面3間, 側面2間)
- 構造：우진각 지붕, 문루形態
- 工事期間：'88.8 ~ '91.12
  - － 原位置 確認 및 設計：'88.8 ~ '89.12.
  - － 施 工：'90.1 ~ '91.12

### ○ 原位置 確認

- 原位置：東小門路 石窟岩위로 最終 確認
- 確認經緯
  - － '89.5.3.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會議 結果
    - \* 惠化門 原來位置를 確認하여 原位置에 復元키로 議決
  - － '89.6.17. 서울시文化財委員(金永上, 朱南哲, 金鴻植)原位置 再調査
    - \* 資料檢討 및 現場確認 調査結果 原位置는 東小門路 石窟岩위로 最終 確認

### ○ 復元計劃 檢討

- 原位置가 東小門路 石窟岩위로 最終確認됨에 따라 原位置와 近接한 地點에 復元하는 方案을 檢討하였음.

### ○ 申請中인 建築許可의 抵觸與否

- 位置：惠化洞 31-1, 31-3 (建築主：김정수)
- 建物規模：地下1, 地上5層 550㎡ (近隣生活施設)
- 惠化門 復元計劃 抵觸與否：A案 및 B案 모두 抵觸豫想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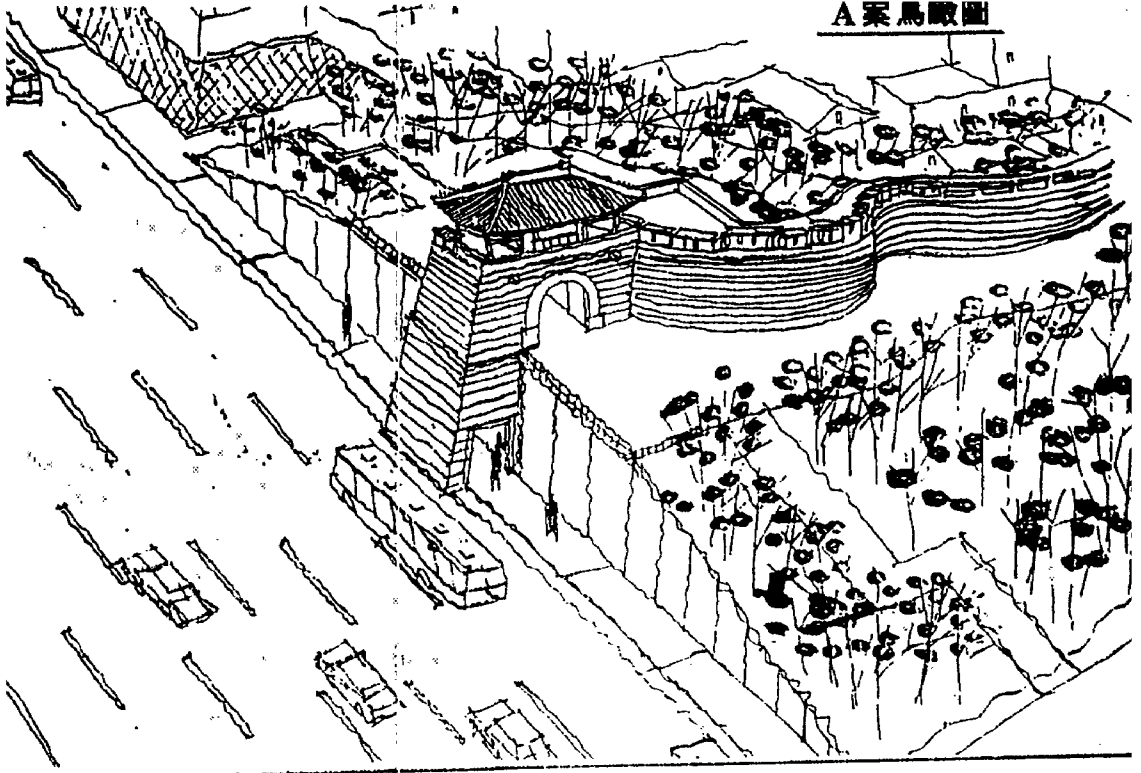
○ 復元計劃(案)

(單位：千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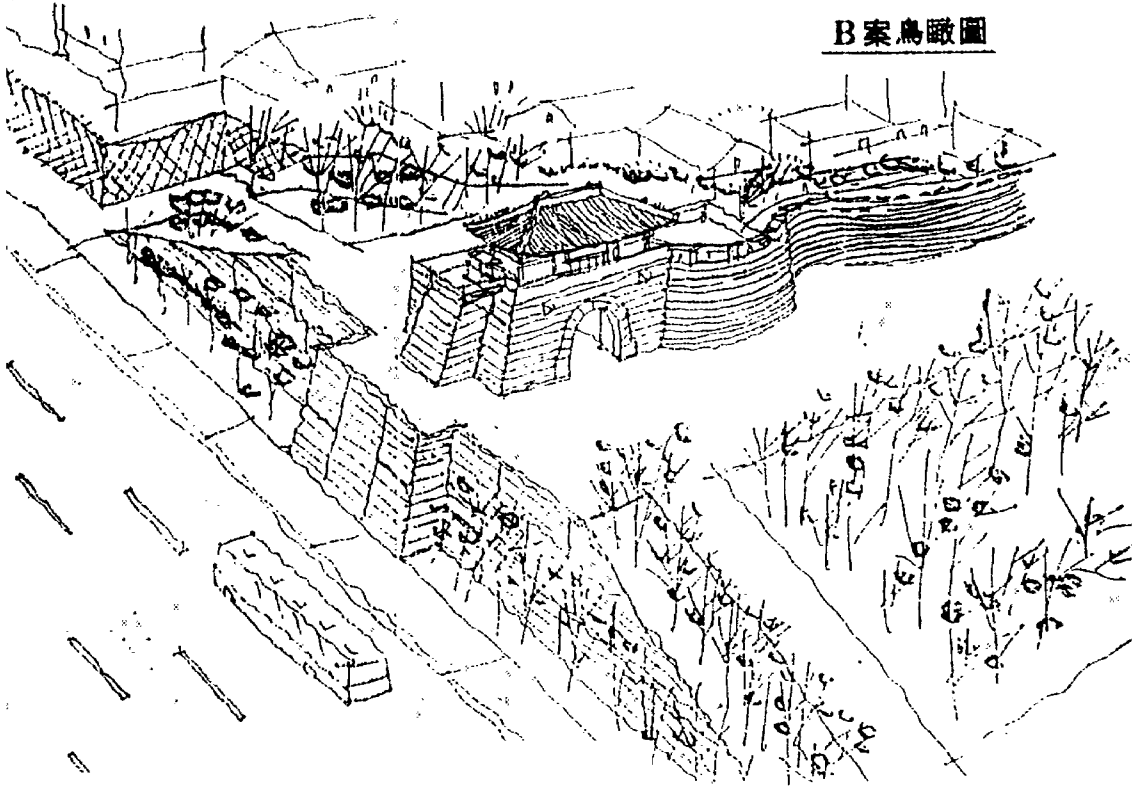
區 分	A 案	B 案
復元規模	約 15 坪 (正面 3 間, 側面 2 間)	約 15 坪 (正面 3 間, 側面 2 間)
復元位置	北側 石窟岩위 (原位置 隣接地點)	石窟岩위 (原位置隣接地點) * A 案보다 原位置에서 3.5 m 後退
既存城壁과 의 關係	既存城壁 7 m 解體	既存城壁 11.5 m 解體
垜地 및 既 存建物 現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垜地面積</li> <li>- 私有地 : 305.82 坪 (10 筆地)</li> <li>- 市有地 : 184.52 坪 (1 筆地)</li> <li>· 建物現況 : 12 棟</li> <li>- 私有地內建物 : 6 棟 (有許可)</li> <li>- 市有地內建物 : 6 棟 (無許可)</li> </ul>	左 同
工事費	2,051,000	2,206,000
· 建物復元	840,000	995,000
· 造景	294,000	294,000
· 補償費	917,000	917,000
	( 305.82 坪 × 3,000 )	( 305.82 坪 × 3,000 )
長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位置에 近接</li> <li>· 道路와 隣接하여 可視效果 優秀</li> <li>· 既存城壁 保護</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周邊環境과 調和</li> <li>· 空間利用 擴大</li> <li>· 步道活用 便宜</li> </ul>
短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步道위에 建물이 位置</li> <li>· 復元形態가 不安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位置 復元의의 減少</li> <li>· 既存城壁 侵害範圍가 넓음</li> </ul>

25/1

A案鳥瞰圖



B案鳥瞰圖



## 2. 西十字閣 復元計劃

傳統文化地帶 復元事業의 一環으로 慶福宮의 西側 망루인  
西十字閣을 原形대로 復元코자 함 (復元位置 및 方案檢討)

- 文化財名稱：史蹟第 117 號 慶福宮의 西側 망루
- 沿 革
  - 創 建：朝鮮太祖 (1395) 慶福宮 建立時 王宮을 지키는 西側 망루로 築造
  - 中 建：壬辰倭亂에 燒失, 1866~1867 年 中建
  - 撤 去：慶福宮 一部 撤去時 함께 撤去 (1927~1930 期間中)
- 復元概要
  - 復元位置：國立中央博物館 西側담장 各各地點
  - 規模및形態
    - 規 模：正面 3間 側面 3間 (約 8 坪)
    - 形 態：석조문루위에 망루設置 (現存 東十字閣과 同一)
  - 所要豫算 (推定)：400,000 千圓
  - 推進日程：'89.7~'90.12
    - 設計 및 關係部署 協議：'89.7~'89.12
    - 復元工事：'90.3~'90.12
- 復元計劃案：4 個案
  - 1 案：原位置 復元
  - 2~4 案：位置變更 (中央博物館內 復元)



○ 復元計劃(案) 檢討

計劃案 區分	1 案	2 案	3 案	4 案
原位置与否	考證에 의한 原位置 復元	移設復元(光化門과 장선과 一致)	移設復元(光化門과 영추문 궁장선과 一致)	移設復元(영추문, 궁장선과 一致)
周邊与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道路中央에 位置(交通障碍 및 安全支障)</li> <li>• 私有地抵觸(博物館 반대편)</li> <li>• 現道路地下埋設物 抵觸憂慮</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歩道약간 抵觸</li> <li>• 国立中央博物館內에 復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歩·車道 抵觸</li> <li>• 歩道迂廻 開設 必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歩·車道 抵觸인됨</li> <li>• 障碍要因 없음</li> <li>• 国立中央博物館內에 復元</li> </ul>
光化門 및 동심자자과의 關係	• 동심자자과 均衡維持	• 光化門을 基準하여 동심자자과 左·右 不均衡	• 光化門을 基準하여 比較的 均衡維持	• 동심자자과 橫軸線이 맞지 않으나 光化門을 中心으로 比較的 均衡維持
国立中央博物館 敷地占用面積	56 坪	117 坪	68坪(3A案: 20坪)	89 坪
工 事 費	489,000 * 私有地收用費用(750,000)別途	398,000	424,000 (3A案: 444,000)	380,000
長 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位置 復元</li> <li>• 復元效果 가장 優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工事費 適正</li> <li>• 私有地 收用 不 必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光化門基準 左右比較的 均衡維持</li> <li>• 復元效果 次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工事費 가장 低廉</li> <li>• 工事施工이 가장 수월</li> </ul>
短 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工事費 가장 많이 所要</li> <li>• 交通 및 安全問題發生</li> <li>• 關聯機關 反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歷史的 意義減少(移設復元)</li> <li>• 光化門基準 左右不均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歩道抵觸 및 地下埋設物 支障 招來</li> <li>• 交通障碍發生 다 소 憂慮</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歷史的 意義減少</li> <li>• 復元效果가 가장 적음</li> </ul>

### 3. 岬江水源 文化財指定

#### < 水源地 現況 >

- ( ) 位 置 : 京都市 城東區 聖水洞1街 642
- ( ) 敷地面積 : 58,000 坪
- ( ) 施設用量 : 500,000  $m^3$  / 日
- ( ) 送水區域 : 6 個區 72 個洞 ( 841,000 名 給水 )

#### < 文化財指定検討對象 現況 >

##### 第1淨水場

- ( ) 送水室
  - 構 造 : 煉瓦葺瓦葺
  - 面 積 : 312.4  $m^2$
  - 建立年度 : 1908 年
- ( ) 乳香濾過池
  - 規 模 : 21.2  $m \times 35.1 m \times 6$  池
  - 面 積 : 4,433  $m^2$
  - 用 量 : 50,000 屯
- ( ) 沈 澱 池
  - 規 模 : 23.8  $m \times 53.8 m \times 3.3 m \times 2$  個所
  - 用 量 : 8,450  $m^3$

##### 第2淨水場

- ( ) 送水用 室
  - 構 造 : 鐵筋コンクリート葺
  - 面 積 : 313  $m^2$
  - 建立年度 : 1922 年
- ( ) 急流濾過池
  - 構 造 : 鐵筋コンクリート葺
  - 面 積 : 700  $m^2$
  - 建立年度 : 1928 年頃
- ( ) 集 水 井
  - 構 造 : 鐵筋コンクリート葺
  - 面 積 : 50  $m^2$
  - 建立年度 : 1922 年 2571

( 沿革 )

第 1 淨水場

- 1903. 12. 美國인 콜브람과 보스트윅키 當時 大韓帝國 政府로부터 上水道施設에 대한 特許를 받음.
- 1905. 8. 特許權을 英國人이 設立한 朝鮮水道會社에 讓渡
- 1906. 8. 第 1 淨水場 起工
- 1908. 8. 第 1 淨水場 竣工 ( 12,500  $m^3$  / 日 用量 )

第 2 淨水場

- 1922. 第 2 淨水場 通水 ( 20,000  $m^3$  / 日 用量 )

( 特 徵 )

第 1 淨水場

- 서울 上水道의 最初의 水源地 施設로써 意味가 깊고 여기에 使用한 器材와 施設 一切는 英·美의 製品이었다.
- 建物의 特徵으로 第 1 送水室은 조적식建物로 入口에 화강석 아취분틀을 두고 左右 窓틀은 반원아취의 窓틀을 쌓고 内部 欄干등자는 陶製로 되어있는 近代式建物

第 2 淨水場

- 建物 모두 철근콘크리트조 建物로써 送水펌프室은 外壁에 突出된 필라스터 礎石은 화강암으로 마감한 近代式 建物임.

( 推 進 經 緯 )

- 文化財 指定을 爲한 1次 現場 調査
  - 調 査 日 : 1989. 7. 7
  - 調 査 者 : 서울市 文化財委員 金永上, 朱南哲
  - 調 査 意 見 : 水道施設의 現場 博物館으로 永久히 保存할 價値가 있으므로 서울市 有形文化財로 指定함이 妥當함.

#### 4. 파고다公園內 八角亭 文化財 指定

##### (現 況)

- 位 置 : 서울市 鍾路區 鍾路2街38 파고다公園內
- 規 模 : 48.4坪 ( 160 m<sup>2</sup> )

##### (沿 革)

- 1897年 光武元年 서울 最初의 公園으로 開設되어 파고다公園 또는 牡丹公園이라 함,  
- 八角亭도 파고다公園 開設의 同時에 新築
- 처음 宮室公園으로 꾸며져 제실 音樂 演奏所로 쓰임,
- 1913年에 이르러 一般人에 每日 公開 되었으며,
- 1919. 3. 1 : 3.1運動의 發祥地로써 獨立宣言文이 朗讀된 場으로 以後 後門을 封鎖하였음.
- 1932年 京城府로 移管되면서 다시 開通하였다.  
( 參考文獻 : 개마 京城特輯號, 京城府史卷1, 京城記略, 서울의 傳統文化等 )

##### (特 徵)

- 서울에서 最初의 公園으로 造成된 곳이며,
- 1919年 3. 1. 獨立만세 示威 出發의 起로지 由緒 깊은

##### (推 進 經 緯)

- 文化財 指定을 爲한 1次 現場 調査
  - 調 査 日 : 1989. 7. 7
  - 調 査 者 : 서울市 文化財委員 金永上, 朱南哲
  - 調 査 意 見 : 서울市 記念物로 指定함이 妥當하다 建立年代나 建物樣式의 特異性으로 有形文化財 指定도 妥當함  
듯함.

5. 忠肅李公神道碑 保護區域 指定

〈文化財 現況〉

- 指定內容：서울市 有形文化財 第70號 ('88.4.20)
- 位 置：서울市 道峰區 下溪1洞山16-1, 32番地
- 文化財：忠肅公 李尙吉 神道碑(70號)  
" 影幀 (69號)
- 管 理 者：碧珍李氏 贊成公 宗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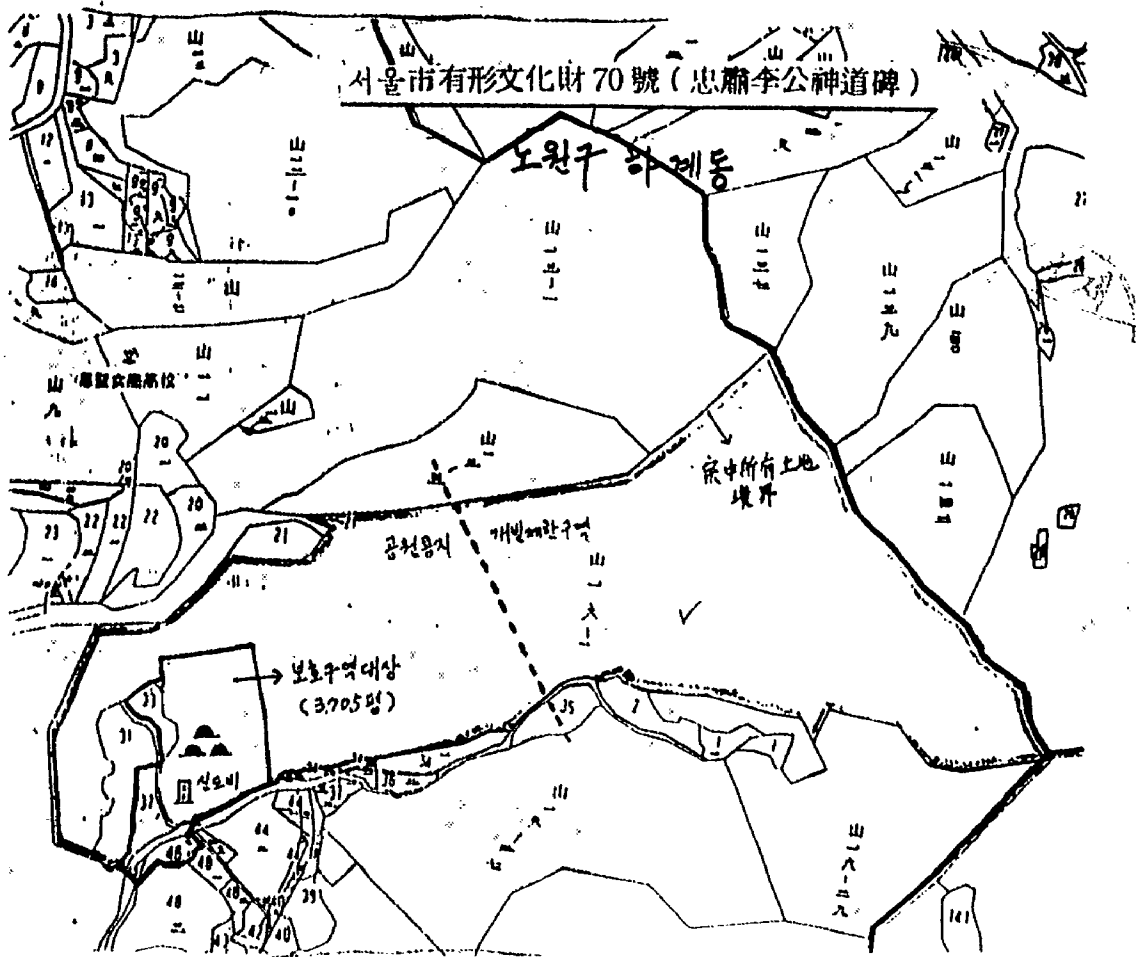
〈保護區域 指定 目的〉

- 서울市 地方文化財의 保護區域을 設定하여 各種 現狀 變更 行爲를 事前 規制함으로써 文化財 周邊地域 淨化와 保護管理에 萬全을 期하고자 함

〈文化財 保護區域 指定審議 對象〉

文 化 財			保 護 區 域		
種 別	指定番號	文化財名	所 在 地	面 積	所 有 者
有形文化財	70 號	忠肅李公 神道碑	蘆原區下溪洞32	1,213 m <sup>2</sup>	碧珍李氏宗中
			" 32-1	38 m <sup>2</sup>	"
			" 33	864 m <sup>2</sup>	"
			" 46	532 m <sup>2</sup>	"
			" 47	59 m <sup>2</sup>	"
			" 山16-1	8,926 m <sup>2</sup>	시 장
			" 22-1	146 m <sup>2</sup>	道路(蘆原區)
			" 46-1	359 m <sup>2</sup>	溝渠( " )
			" 40-1	110 m <sup>2</sup>	道路( " )
		計	12,247 m <sup>2</sup> (3,705 坪)		

〈保護區域圖面〉



〈推 進 經 緯〉

- 保護區域 指定을 위한 現地調査
  - 調査日: '89.6.19
  - 調査者: 서울市 文化財委員 李炫熙
  - 調査意見: 周邊 興件으로 보아 保護區域 設定하여 文化財 保存함이 타당 (保護區域 範圍 約3,500坪)
- 現 保護區域 指定 審議對象區域 一部分 宅地開發 豫定地區 (住宅公社)에 包含되나, 保護區域 指定되면 "서울特別市 指定 文化財 現狀變更等 許可申請"에 依據 措置

## 6. 市 . 地方 文化財 補修工事

### ○ 聖帝廟 담장 設置工事

#### — 文化財內譯 —

- 文化財名 : 서울市 有形文化財 第7號 “聖帝廟”
- 位 置 : 中區 芳山洞 4-96 (芳山市場內)

#### (現 況)

- 聖帝廟 담장의 左右側 및 後面이 老朽되어 美觀 沮害

#### (工 事 概 要)

- 시멘트블럭담장 (右側) 은 撤去後 사고석담장 設置하고 左後面을 안쪽으로 設置 (담장높이 1.8 m, 길이 25 m 設置)

#### (事 業 施 行)

- 施行者 : 中區廳長
- 所要豫算 : 7,086 千圓

#### (問 題 點 檢 討)

- 3層 石塔과 周邊 石物의 位置 移動이 必要함.

### ○ 石坡亭 補修工事

#### — 文化財內譯 —

- 文化財名 : 서울市 有形文化財 第26號 “石坡亭”
- 位 置 : 鍾路區 付岩洞 316-1

#### (現 況)

- 建物 및 附帶施設이 全體的으로 老朽한 狀態임.

#### (工 事 概 要)

- '89 豫算으로 部分的 補修한 計劃임.
- 建物補修 84 坪, 담장補修 35 m

(事業施行)

- 施行者：鍾路區廳長
  - 所要豫算：157,446 千원
- 市費 142,446  
國費 15,000

(問題點檢討)

- 所有者는 部分 補修工事 아닌 3 個年 計劃으로 全面 復元 工事 施行 要望하고 있어 '89 工事 方針 確定 必要함

○ 大院君 別莊 補修工事

文化財內譯

- 文化財名：서울市 有形文化財 第23號 “大院君 別莊”
- 位 置：鍾路區 弘智洞 125

(現 況)

- 元來 石坡亭의 사랑채로서 10坪의 단일 建物인바, 現在 老朽部分이 많아 補修하여 維持管理 必要

(工事概要)

- 木 工 事 - 腐蝕된 木部材 一部 交替
- 지붕 工事 - 解體後 再施工
- 排水路 工事 - 石築設置 및 排水路 工事

(事業施行)

- 施行者：鍾路區廳長
- 所要豫算：13,000 千원 (市費)

(問題點檢討)

- 石坡亭 所有者(신상호)가 차후 元來位置인 石坡亭內로 移轉 復元하기를 希望하나, 移轉時까지는 補修 維持管理가 必要



7. 화산군 신도비 주변 건축 허가

문화제현황

- 0. 문화제명 : 화산군 신도비
- 0.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2동 75-122 (사유지 - 6m 도시계획 도로상 위치)
- 0. 문화제유형 :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80. 6. 11 제41호 지정)
- 0. 건축년도 : 조선조 영조 23년 (1747년) 화산군의 작은 건립

( 건축허가 현황 )

- 0.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2동 75-202외 1필지 (건축주:윤성백)
- 0. 허가일시 : '89. 7. 28 제 168 호
- 0. 규모 {
  - 데지민적 : 364㎡ (110명)
  - 건 물 : 연민적 874㎡(265명 - 지상4층, 지하1층)
  - 용 도 : 근린 생활시설및 주택
- 0. 현공정 : 지하층 굴착준비중 중단 조치 (5%)

( 문 제 점 )

- 1) 화산군 신도비가 도시계획 도로상에 위치 : 도로시설사는 신도비 이전 필요
- 2) 사유재산권 침해 (건축허가 안될시 사유도지 활용 미흡)
- 3) 문화제 주변 경관 저해
- 4) 건축 허가 건물어 문화제로부터 양각 25° 선에 저촉

( 심 의 사 항 )

- 서대문구청의 요구 제책안 검토 -

인 신도비 위치지점이 도시계획 도로상이므로 동일지번(75-122번지)내보이전 건축주 소유도지 일부포함 약 30평 확보하여 기단상향 조성후 신도비 안치하고 부위 조정

건축허가 사항중 신도비쪽은 신도비와 조화될 수 있게 설계 일부 변경 추진

(문화제 위원 작문받아 시행)

# 花山君神道碑周邊現況報告

西 大 門 区

## 花山君神道碑周辺現況報告

### 文化財現況

- . 文化財 名 : 花山君 神道碑
- . 所 在 地 : 西大門區 北加佐2洞75-122 (私有地, 8m都市計劃道路上位置)
- . 文化財類形 : 서울市 指定 地方有形文化財 (80.6.11第41號)
- . 建立 年度 : 朝鮮祖 英祖23年 (1747年) 花山君의 子孫인 낙창군이建立
- . 規 模 : 碑身高2.9m 幅1m 厚0.6m  
龜 : 1.4m × 3.7m
- . 出 來 : 朝鮮祖 중기에 후위도총부의 도총관이었던 花山君의 行跡과 그 世業을 記錄하기위해 建立  
'일명 "거북이"'  
\* 분묘는 1974. . . . . 京畿道 고양군으로 移轉

### 0 . 建築許可現況 (隣接地)

- . 位 置 : 西大門區 北加佐2洞75-202外1筆地 (建築主: 尹成基)
- . 許可 日時 : '89.7.28 第168號
- . 釜地 面積 :  $364\text{m}^2$  (110坪)
- . 規 模 : 延面積  $874\text{m}^2$  (265坪-地下1層, 地上4層)
- . 用 途 : 住宅 및 近隣生活施設
- . 現 工 程 : 地下層 畚土 準備中 中斷措置 (進度: 5%)

0. 問題点

○ . 文化財 立地の 不適定

- 個人所有 私有地に 設置

位 置	面積	所有主	利用 現況	備 考
北加佐洞 7 5 - 1 2 2	1 2 2 m <sup>2</sup>	三河社	花山君 神道碑	私有地
北加佐洞 7 5 - 2 0 2	3 0 4 m <sup>2</sup>	尹成基	建物 新築豫定	私有地
北加佐洞 7 5 - 2 3 8				

- 周邊 住宅 密集

- 低地帶 位置呈 象徵性 多少 未吸 (- 3 m)

○ . 文化財 指定 未告示

○ . 私有地上 設置 ( 7 . 5 坪 )

0. 處理方案

○ . 神道碑을 現位置에서 最大限 保存

○ . 周邊 景觀을 改善토록 造景施設

○ . 文化財 周邊의 霧圍氣造成 ——> 新築建物을 櫺式 ( 折衷形等 ) 으로 設計變更

○ . 神道碑의 同一地番 同一地上으로 移轉 및 基壇設置 ( 높이 1 m 增加 )

0. 効 果

○ . 確固한 保護施設 維持

○ . 神道碑의 象徵性 提高

○ . 文化財로서의 効用性 維持 ——> 現位置 永久 保存

○ . 對市民 接近容易

○ . 神道碑 保護領域 擴張 ( 7 . 5 坪 ——> 4 7 坪 )

\* 擴張部分은 建築주가 寄附豫定

○ . 周邊環境 改善



